제 110 호
2017년6월12일(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정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163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17-116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6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7-48호 쌍봉동 통장(22통) 모집 재공고 /8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2017-672호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11

○ 여수시 규칙 제2017-673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4

○ 여수시 규칙 제2017-674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8

회람								

여수시 고시 제2017 - 1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 적	점용.사용 기 간	피 허 가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17-55 ('17.6.12)	여수시 소호동 1219 지선	1,134	웅천~소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시추조사)	2017.6.12. ~ 2017.7.31.	서울시 서초구 미방로6길 21(양재동, 지창빌딩 2층)	하리이앤씨(주)	

2017. 6.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7 -1163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륜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말소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7년 6월12일 ~ 2017년 6월 27일(15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7년 6월 30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차 2대【붙임 내역참조】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본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매각·폐차) 됨을 알려 드리며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100만원)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교통과 061-659-4144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

강제(폐차)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

관리번호	2017 - 28	
○ 차량번호 : 미상 ○ 소 유 자 : 미상 ○ 방치내역 - 견인예정일 : ‘17. 6. 20이후 - 방치장소 : 여수시 덕충동 2024-3번지앞 도로변		
관리번호	2017 - 29	
○ 차량번호 : 미상 ○ 소 유 자 : 미상 ○ 방치내역 - 견인예정일 : ‘17. 6. 20이후 - 방치장소 : 여수시 문수동 세움교회 앞 주차장내		

(80*80)

여수시 공고 **제2017 - 1165**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9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6. 12. ~ 2017. 7. 2.(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아래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여수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61-659-4144)**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대상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명	차량소유자		무단방치장소	차량보관장소
			주소	성명		
1	전남81나8206	봉고프런티어	전남 여수시 신기남3길 12-6(신기동)	오 0 석	여수시 신기남3길 13(신기동)	호남폐차장
2	48머5899	비스토	여수시 신기남1길 16-11(신기동)	박 0 곤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주차장내	대성폐차장

여수시 쌍봉동 제 2017 - 48호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22통장
 - 관할구역 : 22통(학동 축협 주변)
2. 공고(접수)기간 : '17. 6. 12. ~ '17. 6. 19.【7일간】
3.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여수시 흥국로 25(학동)]
4.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나.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출방법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7. 제출서류
 가.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
 나.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table>
<tr><td>지원대상</td><td colspan="7">여수시 쌍봉동 (　　)통장</td></tr>
<tr><td rowspan="4">사 진
(3×4㎝)</td><td colspan="2">성 명</td><td>(한자)</td><td>생년
월일</td><td>.　.　.
(연령 만　세)</td><td>성별</td><td>남、여</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거주
기간</td><td colspan="2">.　.　.　.　~ 현재(　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휴대폰
자택(사무실)</td><td>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직 업</td><td colspan="5">(구체적 기재)</td></tr>
<tr><td rowspan="5">최종학력
및
주요경력</td><td>년</td><td>월</td><td>일</td><td colspan="3">내　　용</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4">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td><td colspan="2">봉사활동 장소</td><td>활동기간</td><td>활동시간</td><td colspan="2">활동내용</td><td>비고</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3">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td><td colspan="2">훈격
(기관명)</td><td colspan="2">수상부문</td><td colspan="2">수상일자</td><td>비고</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able>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주민 추천서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여수시 쌍봉동 (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서명)	추천일

2017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5. 24.)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672호

붙임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672호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5. 24.)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673호

붙임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673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

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을 작성하여 그 우편물수령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6. 그 밖에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서류명칭 (세목 등)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발송연월일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 생년월일 납세자명 / (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 납부세액 서류의 명칭	우편번호 /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교부(수령) 연월일	미교부 사유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그 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 등)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 기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담당자	팀장	과장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	계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장		충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017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5. 24.)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12일

여 수 시 장 [illegible] 인

여수시 규칙 제674호

붙임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674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 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 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 장		납 액 통 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 입 년 도	년도 세입		
세입과목 항		결 정 내 용	본 세	가산금	계
		세 액			
세입과목 목		가 산 세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 역 서

구분 / 읍면동	과세표준	세율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 ○기(월)분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